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통위원에 한국은행 부총재 제외 및 노동계 위원 추가〉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06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금통위원회에 한국은행 부총재 제외 및 노동계 위원 추가 (안 제13조제1 항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7. 24.

다. 회 부 일 : 2025.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렇지만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함.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개정).

III. 검토의견

1. 금통위원에 한국은행 부총재 제외 및 노동계 위원 추가 (안 제13 조제1항 등)

현 행	개 정 안
○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7인) - 한국은행 총재 - <u>한국은행 부총재</u> - 기재부장관 추천 위원 1명 - 한국은행 총재 추천 위원 1명 - 금융위 위원장 추천 위원 1명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위원 1명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위원 1명 < 신 설 >	○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7인) - 한국은행 총재 - < 삭 제 > - 기재부장관 추천 위원 1명 - 한국은행 총재 추천 위원 1명 - 금융위 위원장 추천 위원 1명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위원 1명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위원 1명 - <u>노동후보추천위원회</u> 추천 위원 1명

현행법¹⁾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도록

- 1)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하고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현행법²⁾상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기재부 추천 1인, 한국은행 추천 1인, 금융위 추천 1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1인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정안은 이처럼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통위 위원으로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부총재를 제외하는 내용임.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2)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등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금통위 위원으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직을 신설하여 통화신용정책 등에 있어서 노동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금통위 위원 7인에는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 한국은행 총재 추천 위원 1인 등 3인이 한국은행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 금통위의 집행조직인 한국은행의 의견이 금통위 결정에 과다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바, 개정안은 금통위 위원에서 한국은행 부총재를 제외함으로써 한국은행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금통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보다 중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현행법³⁾은 금통위가 결정하는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통위 위원 구성도 금융·경제 또는 산업

3) 「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13조(구성)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⁴⁾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통위원들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금통위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금통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대표성보다는 통화신용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중립적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금통위 구성에 있어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현행법 체계 및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⁵⁾.

둘째, 한국은행 부총재를 금통위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 집행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의 금통위원 구성은 2003년 개정된 사항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2003년까지는 금통위원 구성에 한국은행 총재만 포함되었으나 2003년에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통위 위원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음.

4) 「한국은행법」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5)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도 금통위 구성 변경은 중립성 및 전문성, 현 체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구성 연혁]

구분	위원 수	당연직	임명직		
			정부 추천	민간 추천	한국은행 추천
한은법 (1950.5.5)	7인	• 재무부장관 • 한은총재 (총 2인)	• 농림부장관 1인 • 기획처경제위원회 1인 (총 2인)	• 금융기관 2인 • 대한상공회의소 1인 (총 3인)	-
제1차 개정 (1962.5.24)	9인	• 재무부장관 • 한은총재 (총 2인)	• 경제기획원장관 1인 • 농림부장관 2인 • 상공부장관 2인 (총 5인)	• 금융기관 2인 (총 2인)	-
제6차 개정 (1997.12.31)	7인	• 한은총재 (총 1인)	• 재정경제원장관 1인 • 금감위 위원장 1인 (총 2인)	• 대한상공회의소 1인 • 전국은행연합회 1인 • 한국증권업협회 1인 (총 3인)	1인
제7차 개정 (2003.9.3)	7인	• 한은총재 • 한은부총재 (총 2인)	• 재정경제원장관 1인 • 금융위 위원장 1인 (총 2인)	• 대한상공회의소 1인 • 전국은행연합회 1인 (총 2인)	1인

법률 개정 당시 검토보고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부총재를 금통위원으로 포함시킬 경우 금융시장 및 일선 금융기관과 상시 접촉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조직의 간부가 금통위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은행 집행부의 실무경험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등 정책결정과 집행간에 연계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시 개정안에는 금통위 위원에 한국은행측 인사가 7인 중 4인(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한국은행 추천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은행 부총재를 포함시키는 대신 한국은행 측의 과도한 의견 반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추천 위원을 1인으로 수정하여 과반수가 넘지 않게 개정된 바 있음.

실제 한국은행 부총재는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예금자보호법」 등에서 금융위원회, 예금보호위원회 등 경제·금융의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높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며, 금통위에 포함 시 통화신용정책의 보다 효율적 집행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

회의명	위원회 목적	근거 법령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예금자보호법」 제9조
외환건전성협의회	안정적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추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4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건전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분석·점검 등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따라서 금통위원으로 한국은행 부총재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현행과 같이 한국은행 부총재의 실무적 전문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측면과 한국은행의 과도한 의견 반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신용정책 의사결정기구에 각 중앙은행 부총재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⁶⁾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에는 부총재 1명,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에는 부총재 3명, 일본은행 정책위원회(政策委員會)에는 부총재 2명이 구성원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 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생략) 2. <u>한국은행 부총재</u> 3.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부터 <u>제7호</u> 까지 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 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 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생략)	제13조(구성) ①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7. (현행과 같음) 8. <u>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u> <u>하는 위원 1명</u>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8호</u>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3조제 1항제3호부터 <u>제7호</u> 까지의 위 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u>제7</u> <u>호</u> 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 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 ----- <u>제8호</u> ----- ----- ----- ----- ----- ----- ② ----- <u>제8호</u> ----- ----- ----- -----

현행	개정안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 ----- -----.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 제1항제3호부터 <u>제7호</u> 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 ----- <u>제8호</u> ----- ----- ----- ----- -----.

문의처

02)6788-5157